

# 2020년도 제1차 학교법인상해한국학교이사회 심의·의결 결과

1. 개최일시: 2020. 1. 15.(수), 14:30
2. 인원(정수/재적/참석): 11명/7명/7명
3. 안건 및 심의내용

번 호	안건명	심의 결과	주 요 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2020학년도 상 해한국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	원안 가결	<p>▶ 2020학년도 본예산 세입세출현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과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구성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입</td> <td>학부모부담수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3,787,67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5.52%</td> </tr> <tr> <td>지원금수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1,40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6.02%</td> </tr> <tr> <td>행정활동수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33,33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0.75%</td> </tr> <tr> <td>전입금및지원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0.00%</td> </tr> <tr> <td>기타수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782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.91%</td> </tr> <tr> <td>이월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70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.80%</td> </tr> <tr> <td><b>예산액 합계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71,203,000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100%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출</td> <td>인건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7,847,13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9.08%</td> </tr> <tr> <td>학교운영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1,385,89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0.05%</td> </tr> <tr> <td>시설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962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.76%</td> </tr> <tr> <td>수익자부담경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8,025,97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5.33%</td> </tr> <tr> <td>기타지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982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.78%</td> </tr> <tr> <td><b>예산액 합계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71,203,000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100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과목	금액	구성비	세입	학부모부담수입	53,787,670	75.52%	지원금수입	11,400,000	16.02%	행정활동수입	533,330	0.75%	전입금및지원금	0	0.00%	기타수입	2,782,000	3.91%	이월금	2,700,000	3.80%	<b>예산액 합계</b>	<b>71,203,000</b>	<b>100%</b>	세출	인건비	27,847,136	39.08%	학교운영비	21,385,894	30.05%	시설비	1,962,000	2.76%	수익자부담경비	18,025,970	25.33%	기타지출	1,982,000	2.78%	<b>예산액 합계</b>	<b>71,203,000</b>	<b>100%</b>
구분	과목	금액	구성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입	학부모부담수입	53,787,670	75.5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원금수입	11,400,000	16.0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행정활동수입	533,330	0.7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입금및지원금	0	0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수입	2,782,000	3.9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월금	2,700,000	3.8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b>예산액 합계</b>	<b>71,203,000</b>	<b>100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출	인건비	27,847,136	39.0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학교운영비	21,385,894	30.0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시설비	1,962,000	2.7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익자부담경비	18,025,970	25.3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지출	1,982,000	2.7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b>예산액 합계</b>	<b>71,203,000</b>	<b>100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상해 한국 학교 학칙 개정안	수정 가결	<p>▶ 개정규정 신규대조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 정 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제3조(명칭)</b> 본교의 명칭은 상해한국학교(上海韩国学校, Shanghai Korean School)로 한다.</td> <td><b>제3조(명칭)</b> 본교의 명칭은 상해한국학교(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, Shanghai Korean School)로 한다.(2017.09.01.)</td> </tr> <tr> <td><b>&lt;수정&gt;</b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제15조(입학)</b> ①초등부 입학 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등록순으로 한다.&lt;추가사항&gt;</td> <td><b>제15조(입학)</b> ①초등부 입학 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등록순으로 한다. 단, 만 5세 아동이어도 생일이 1.1.~2.28.(29)의 경우 입학을 허가한다.(2020.01.15.)</td> </tr> <tr> <td><b>제16조(전.편입학)</b> ①전.편입학은 전.편입학하기 직전 학년(2학기에 전.편입하는 경우 해당학년의 1학기)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</td> <td><b>제16조(전.편입학)</b> ①전.편입학은 전.편입하기 직전 학년·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(2020.01.15.)</td> </tr> <tr> <td><b>제33조(입학금 및 수업료)</b> ②수업료는 3개월 단위로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&lt;수정&gt; ④&lt;누락,수정&gt;</td> <td><b>제33조(입학금 및 수업료)</b> ②수업료는 학기 단위로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(2020.01.15.) ④입학금은 입학 또는 재입학시 납부하여야 하며, 학기 시작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학기 시작일 3일 전까지 입학 취소 또는 포기시 50%를 반환한다.(2020.01.15.)</td> </tr> <tr> <td><b>⑤&lt;누락,수정&gt;</b></td> <td><b>⑤전.편입시 입학금은 전.편입시 납부하여야 하며, 등교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등교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시 50%를 반환한다.(2020.01.15.)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 행	개 정 안	<b>제3조(명칭)</b> 본교의 명칭은 상해한국학교(上海韩国学校, Shanghai Korean School)로 한다.	<b>제3조(명칭)</b> 본교의 명칭은 상해한국학교(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, Shanghai Korean School)로 한다.(2017.09.01.)	<b>&lt;수정&gt;</b>		<b>제15조(입학)</b> ①초등부 입학 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등록순으로 한다.<추가사항>	<b>제15조(입학)</b> ①초등부 입학 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등록순으로 한다. 단, 만 5세 아동이어도 생일이 1.1.~2.28.(29)의 경우 입학을 허가한다.(2020.01.15.)	<b>제16조(전.편입학)</b> ①전.편입학은 전.편입학하기 직전 학년(2학기에 전.편입하는 경우 해당학년의 1학기)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	<b>제16조(전.편입학)</b> ①전.편입학은 전.편입하기 직전 학년·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(2020.01.15.)	<b>제33조(입학금 및 수업료)</b> ②수업료는 3개월 단위로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<수정> ④<누락,수정>	<b>제33조(입학금 및 수업료)</b> ②수업료는 학기 단위로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(2020.01.15.) ④입학금은 입학 또는 재입학시 납부하여야 하며, 학기 시작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학기 시작일 3일 전까지 입학 취소 또는 포기시 50%를 반환한다.(2020.01.15.)	<b>⑤&lt;누락,수정&gt;</b>	<b>⑤전.편입시 입학금은 전.편입시 납부하여야 하며, 등교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등교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시 50%를 반환한다.(2020.01.15.)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3조(명칭)</b> 본교의 명칭은 상해한국학교(上海韩国学校, Shanghai Korean School)로 한다.	<b>제3조(명칭)</b> 본교의 명칭은 상해한국학교(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, Shanghai Korean School)로 한다.(2017.09.01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&lt;수정&gt;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15조(입학)</b> ①초등부 입학 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등록순으로 한다.<추가사항>	<b>제15조(입학)</b> ①초등부 입학 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등록순으로 한다. 단, 만 5세 아동이어도 생일이 1.1.~2.28.(29)의 경우 입학을 허가한다.(2020.01.15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16조(전.편입학)</b> ①전.편입학은 전.편입학하기 직전 학년(2학기에 전.편입하는 경우 해당학년의 1학기)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	<b>제16조(전.편입학)</b> ①전.편입학은 전.편입하기 직전 학년·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(2020.01.15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33조(입학금 및 수업료)</b> ②수업료는 3개월 단위로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<수정> ④<누락,수정>	<b>제33조(입학금 및 수업료)</b> ②수업료는 학기 단위로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(2020.01.15.) ④입학금은 입학 또는 재입학시 납부하여야 하며, 학기 시작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학기 시작일 3일 전까지 입학 취소 또는 포기시 50%를 반환한다.(2020.01.15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⑤&lt;누락,수정&gt;</b>	<b>⑤전.편입시 입학금은 전.편입시 납부하여야 하며, 등교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등교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시 50%를 반환한다.(2020.01.15.)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번호	안건명	심의 결과	주요 내용				
2	상해 한국 학교 학칙 개정안	수정 가결	<p>▶개정규정 신규대조문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b>제34조(장학금 또는 수업료 감면)</b>            ②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25% 감면할 수 있다. 또한 한 가정의 자녀가 4인 이상 본교에 재학할 경우 최저학년의 수업료는 100% 감면할 수 있다. &lt;수정&gt;         </td> <td> <b>제34조(장학금 또는 수업료 감면)</b>            ②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수업료를 둘째자녀 10%, 셋째자녀 25%, 넷째자녀 이상은 100% 감면할 수 있다.(2020.01.15.)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<b>제35조(수업료 체납자 조치)</b>            ①수업료를 2분기 이상 체납한 자는 출석을 중지시키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.&lt;수정&gt;             ③&lt;신설&gt;         </td> <td> <b>제35조(수업료 체납자 조치)</b>            ①수업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출석을 중지시키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. (2020.01.15.)            ③수업료 미납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입학에 제한할 수 있으며 학년 승급을 위한 반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. 또한, 초·중·고 졸업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(2020.01.15.)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<b>제34조(장학금 또는 수업료 감면)</b> ②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25% 감면할 수 있다. 또한 한 가정의 자녀가 4인 이상 본교에 재학할 경우 최저학년의 수업료는 100% 감면할 수 있다. <수정>	<b>제34조(장학금 또는 수업료 감면)</b> ②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수업료를 둘째자녀 10%, 셋째자녀 25%, 넷째자녀 이상은 100% 감면할 수 있다.(2020.01.15.)	<b>제35조(수업료 체납자 조치)</b> ①수업료를 2분기 이상 체납한 자는 출석을 중지시키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.<수정>  ③<신설>	<b>제35조(수업료 체납자 조치)</b> ①수업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출석을 중지시키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. (2020.01.15.) ③수업료 미납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입학에 제한할 수 있으며 학년 승급을 위한 반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. 또한, 초·중·고 졸업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(2020.01.15.)
<b>제34조(장학금 또는 수업료 감면)</b> ②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25% 감면할 수 있다. 또한 한 가정의 자녀가 4인 이상 본교에 재학할 경우 최저학년의 수업료는 100% 감면할 수 있다. <수정>	<b>제34조(장학금 또는 수업료 감면)</b> ②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수업료를 둘째자녀 10%, 셋째자녀 25%, 넷째자녀 이상은 100% 감면할 수 있다.(2020.01.15.)						
<b>제35조(수업료 체납자 조치)</b> ①수업료를 2분기 이상 체납한 자는 출석을 중지시키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.<수정>  ③<신설>	<b>제35조(수업료 체납자 조치)</b> ①수업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출석을 중지시키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. (2020.01.15.) ③수업료 미납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입학에 제한할 수 있으며 학년 승급을 위한 반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. 또한, 초·중·고 졸업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(2020.01.15.)						
3	2020 학년도 신임교원 고용 계약 체결안	원안 가결	<p>▶2020학년도 신임교원 채용완료에 따른 고용계약 체결 확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등학교원 5명(교감1명, 교사 4명)</li> <li>- 중등학교원 15명(중도임용포기자 발생 및 영어 추가교원 채용 완료)</li> </ul>				

☞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법인이사회나 담당부서(행정실,6493-95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